

해관총서 제248호령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 식품 외국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규정》 공포에 관한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입 식품 외국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규정》은 이미 2021년 3월 12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기에 이에 공포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22일 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로 공포되었으며,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예약봉

2021년 4월1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 식품 외국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및 그 시행 조례, 《국무원의 식품 등 생산품 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국내로 수출하는 식품의 국외 생산, 가공, 저장기업(이하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으로 통칭한다)의 등록관 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에 규정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은 식품 첨가제, 식품 관련 생산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을 제외한다.

제3조 해관총서는 수입 식품 국외 생산업체의 등록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해관총서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등록조건과 절차

제5조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의 등록조건:

(1) 소재지 국가(지역)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는 해관총서 등의 효율성 평가, 심사를 통과할 것

(2) 소재지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그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을 것

(3) 유효한 식품 안전 위생관리 및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소재지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며, 중국 국내로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할 것

(4) 해관총서와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관련 검

사 검역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제6조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의 등록방법은 소재지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이 추천 등록과 기업의 신청 등록을 포함한다.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공급원, 생산 가공 공정, 식품 안전 내역 데이터, 소비층, 식용 방식 등의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또한 국제 관례와 결합하여 수입 식품 국외생산기업의 등록방법과 신청서류를 확정한다.

위험분석이나 어떤 증거 표명에 따라 어떤 식품의 위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관총서는 관련 식품의 국외 생산기업의 등록방법과 신청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하 열거한 품목의 국외 생산기업은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한다: 육류 와 육류 제품, 내장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알과 알 제품, 식용유지와 유류, 소를 넣은 면류, 식용 곡물, 곡물 제분공업 제품과 맥아, 신선 및 건조 채소, 건조한 콩, 조미료, 견과류와 종자류, 건조 과일, 굵지 않은 커피콩과 카카오콩, 특수 선식 식품, 건강기능 식품

제8조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은 반드시 그 등록 추천하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 검사를 실시하고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아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의 추천서

(2) 기업명단 및 기업 등록신청서

(3) 기업의 신분증명서류. 예를 들면,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 추천하는 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확인서

(5)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한 심사 검사보고서

필요한 경우, 해관총서는 기업의 식품 안전위생 및 보호 체계 서류, 예를 들면 기업의 공장, 작업장, 냉동창고의 평면도 및 생산 공정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이 규정 제7조에 열거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을 국외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스스로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하고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1) 기업등록신청서

(2) 기업의 신분증명서류. 예를 들면,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3) 기업 인증하는 이 규정의 요구에 적합하다는 확인서

제10조 기업등록신청서의 내용에는 반드시 기업의 명칭, 소재지 국가(지역), 생산 장소의 주소, 법정대표자, 연락담당자, 연락방법, 소재지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 신청한 식품 종류, 생산 유형, 생산능력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등록신청서류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국가(지역)와 중국의 등록방법과 신청서류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쌍방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 또는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해관총서는 스스로 또는 위탁한 관련 기관에 심사평가팀을 조직하여 서면 검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 및 그 조합을 통하여 등록 신청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체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평가팀은 2명 이상의 평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과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은 반드시 상술한 심사평가 작업을 실시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총서는 심사평가 상황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한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중국 내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지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 또는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은 등록하지 않고 소재지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 또는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이미 등록된 기업이 중국 국내에 식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 내부와 겉포장에 중국 내 등록번호 또는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6조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가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을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해관총서는 등록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 명단을 일률적으로 발표한다.

제3장 등록관리

제18조 해관본서는 스스로 또는 위탁한 유관기관 심사평가팀은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한 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재조사한다. 심사평가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등록 신청과정을 거쳐야 하며, 해관총서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등록사항 변경정보 대조표
- (2) 변경정보와 관련된 증명서류

해관총서는 평가 후 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한다.

생산장소의 이전, 법정대리인의 변경 또는 소재지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재신청 하여야 하고, 중국 내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은 등록을 연장하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내에 등록 신청의 경로를 통해서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연장 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등록 연장신청서

(2) 계속해서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확인서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업에 대해 등록을 연장하고, 등록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한다.

제21조 이미 등록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나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에 통지하고 공고한다.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 또는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3) 더 이상 이 규정 제5조 제(2)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소재지 국가(지역)의 관할 당국은 반드시 이미 등록된 기업에 대해 유효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이미 등록된 기업이 계속해서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촉구하며,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일시적으로 관련 기업의 중국 수출을 중단시켜야 하고, 곧바로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개선시켜야 한다.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스스로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중국에 식품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곧바로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제23조 해관총서는 이미 등록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더 이상 등록 요

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시정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관련 업체의 식품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 추천 등록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지된 경우에는 관할 당국은 반드시 관련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도록 감독해야 하고, 해관총서에 서면으로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스로 또는 위탁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해관총서에 서면으로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반드시 기업의 시정정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심사에 합격한 경우 관련 기업의 식품 수입을 재개한다.

제24조 이미 등록된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1) 기업 스스로의 원인으로 인해 수입 식품에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국 국내로 수출한 식품이 수입 검사 검역 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어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기업의 식품 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여 중국 국내로 수출된 식품이 안전 위생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4) 시정한 후에도 불구하고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5)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정을 은닉한 경우

(6) 해관총서의 재조사와 사고조사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매도, 도용한 경우

제4장 부칙

제25조 국제기구 또는 중국 국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은 반드시 전염병을 발표하고 통보해야 하고, 혹은 관련 식품이 수입검역 검사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공중 위생사고 등 엄중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관총서는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식품의 수입 중단을 공고하고, 이 기간 동안에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식품 생산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이 규정 중에서 소재지 국가(지역) 관할 당국이란 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의 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안전 위생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8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22일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45호로 공포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된《수입 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海关总署第 248 号令

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的令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已于 2021 年 3 月 12 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 2022 年 1 月 1 日起实施。2012 年 3 月 22 日原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 145 号公布，根据 2018 年 11 月 23 日海关总署令第 243 号修改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同时废止。

署长 倪岳峰

2021 年 4 月 12 日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加强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生产、加工、贮存企业（以下统称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适用本规定。

前款规定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不包括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的生产、加工、贮存企业。

第三条 海关总署统一负责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工作。

第四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获得海关总署注册。

第二章 注册条件与程序

第五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条件：

(一) 所在国家（地区）的食品安全管理体系通过海关总署等效性评估、审查；

(二) 经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设立并在其有效监管下；

(三) 建立有效的食品安全卫生管理和防护体系，在所在国家（地区）合法生产和出口，保证向中国境内出口的食品符合中国相关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

(四) 符合海关总署与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商定的相关检验检疫要求。

第六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方式包括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注册和企业申请注册。

海关总署根据对食品的原料来源、生产加工工艺、食品安全历史数据、消费人群、食用方式等因素的分析，并结合国际惯例确定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方式和申请材料。

经风险分析或者有证据表明某类食品的风险发生变化的，海关总署可以对相应食品的境外生产企业注册方式和申请材料进行调整。

第七条 下列食品的境外生产企业由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向海关总署推荐注册：肉与肉制品、肠衣、水产品、乳品、燕窝与燕窝制品、蜂产品、蛋与蛋制品、食用油脂和油料、包馅面食、食用谷物、谷物制粉工业产品和麦芽、保鲜和脱水蔬菜以及干豆、调味料、坚果与籽类、干果、未烘焙的咖啡豆与可可豆、特殊膳食食品、保健食品。

第八条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应当对其推荐注册的企业进行审核检查，确认符合注册要求后，向海关总署推荐注册并提交以下申请材料：

(一)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函；

(二) 企业名单与企业注册申请书；

(三) 企业身份证明文件，如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颁发的营业执照等；

(四)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企业符合本规定要求的声明；

(五)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对相关企业进行审核检查的审查报告。

必要时，海关总署可以要求提供企业食品安全卫生和防护体系文件，如企业厂区、车间、冷库的平面图，以及工艺流程图等。

第九条 本规定第七条所列食品以外的其他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自行或者委托代理人向海关总署提出注册申请并提交以下申请材料：

- (一) 企业注册申请书；
- (二) 企业身份证明文件，如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颁发的营业执照等；
- (三) 企业承诺符合本规定要求的声明。

第十条 企业注册申请书内容应当包括企业名称、所在国家（地区）、生产场所地址、法定代表人、联系人、联系方式、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的注册编号、申请注册食品种类、生产类型、生产能力等信息。

第十一条 注册申请材料应当用中文或者英文提交，相关国家（地区）与中国就注册方式和申请材料另有约定的，按照双方约定执行。

第十二条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对提交材料的真实性、完整性、合法性负责。

第十三条 海关总署自行或者委托有关机构组织评审组，通过书面检查、视频检查、现场检查等形式及其组合，对申请注册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实施评估审查。评审组由2名以上评估审查人员组成。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和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应当协助开展上述评估审查工作。

第十四条 海关总署根据评估审查情况，对符合要求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予以注册并给予在华注册编号，书面通知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对不符合要求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不予注册，书面通知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

第十五条 已获得注册的企业向中国境内出口食品时，应当在食品的内、外包装上标注在华注册编号或者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的注册编号。

第十六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有效期为5年。

海关总署在对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予以注册时，应当确定注册有效期起止日期。

第十七条 海关总署统一公布获得注册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名单。

第三章 注册管理

第十八条 海关总署自行或者委托有关机构组织评审组，对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是否持续符合注册要求的情况开展复查。评审组由2名以上评估审查人员组成。

第十九条 在注册有效期内，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信息发生变化的，应当通过注册申请途径，向海关总署提交变更申请，并提交以下材料：

- (一) 注册事项变更信息对照表；
- (二) 与变更信息有关的证明材料。

海关总署评估后认为可以变更的，予以变更。

生产场所迁址、法定代表人变更或者所在国家（地区）授予的注册编号改变的应当重新申请注册，在华注册编号自动失效。

第二十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需要延续注册的，应当在注册有效期届满前3至6个月内，通过注册申请途径，向海关总署提出延续注册申请。

延续注册申请材料包括：

- (一) 延续注册申请书；
- (二) 承诺持续符合注册要求的声明。

海关总署对符合注册要求的企业予以延续注册，注册有效期延长5年。

第二十一条 已注册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注销其注册，通知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并予以公布：

- (一) 未按规定申请延续注册的；
- (二)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主动申请注销的；
- (三) 不再符合本规定第五条第（二）项要求的。

第二十二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应当对已注册企业实施有效监管，督促已注册企业持续符合注册要求，发现不符合注册要求的，应当立即采取控制措施，暂停相关企业向中国出口食品，直至整改符合注册要求。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自行发现不符合注册要求时，应当主动暂停向中国出口食品，立即采取整改措施，直至整改符合注册要求。

第二十三条 海关总署发现已注册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不再符合注册要求的，应当责令其在规定期限内进行整改，整改期间暂停相关企业食品进口。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注册的企业被暂停进口的，主管当局应当监督相关企业在规定期限内完成整改，并向海关总署提交书面整改报告和符合注册要求的书面声明。

自行或者委托代理人申请注册的企业被暂停进口的，应当在规定期限内完成整改，并向海关总署提交书面整改报告和符合注册要求的书面声明。

海关总署应当对企业整改情况进行审查，审查合格的，恢复相关企业食品进口。

第二十四条 已注册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撤销其注册并予以公告：

- （一）因企业自身原因致使进口食品发生重大食品安全事故的；
- （二）向中国境内出口的食品在进境检验检疫中被发现食品安全问题，情节严重的；
- （三）企业食品安全卫生管理存在重大问题，不能保证其向中国境内出口食品符合安全卫生要求的；
- （四）经整改后仍不符合注册要求的；
- （五）提供虚假材料、隐瞒有关情况的；
- （六）拒不配合海关总署开展复查与事故调查的；
- （七）出租、出借、转让、倒卖、冒用注册编号的。

第四章 附则

第二十五条 国际组织或者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国家（地区）主管当局发布疫情通报，或者相关食品在进境检验检疫中发现疫情、公共卫生事件等严重问题的，海关总署公告暂停该国家（地区）相关食品进口，在此期间不予受理该国家（地区）相关食品生产企业注册申请。

第二十六条 本规定中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指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所在国家（地区）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卫生监管的官方部门。

第二十七条 本规定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二十八条 本规定自 2022 年 1 月 1 日起施行。2012 年 3 月 22 日原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 145 号公布，根据 2018 年 11 月 23 日海关总署令 243 号修改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同时废止。

海关总署第 248 号令下载链接：[海关总署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的令.pdf](#)